

#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39호
등록연월일	196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철우
편집인	공보실장 최철호
인쇄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 차 례

△조례	2
제472호	서울특별시 전화 개발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473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규칙	5
제631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제632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제633호	서울특별시 기구개편 심의회 규칙
제634호	서울특별시 적제중 개정규칙
제636호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중 개정규칙
제637호	서울특별시 고용원 규정중 개정규칙
제638호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사설	22
△고시	32
제19호	서울특별시 고시제 1094호중 일부개정
제20호	도로구역고시
제21호	사묘성분등록 변경신청
제22호	사방지정기 해제
△공고	36
제51호	포지세목 공고
제52호	환지에정기 일부변경

( 2 ) 조 례

- 제53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처분
- 제54호 세목공고
- 제55호 관지처분 일부분경
- 제56호 1967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 제57호 시유건물 차거조건부 매각처분
- 제58호 세목공고
- 제59호 번상판경 및 번상명령서 공시송달
- 제60호 체비지 매각공고
- 제61호 세목공고
- 제62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실시
- 제63호 중앙시벌 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건립  
및 운영적조자 모집
- 제64호 관지에정지 일부분경 지정

△예 규.....59

제148호 제조사 청소에 대한 결정권등의 내부위임

**조 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電化開發基金設置 및 管理條例  
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2號

서울特別市電化開發基金設置 및 管理條例

第1條(目的) 이 條例는 市民生活의 向上과 都市의 均衡的 發展을 圖謀하고  
자 서울特別市 未電化區域에 電氣를 供給하기 爲한 電化開發基金(以下 基  
金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를 圓滑히 管理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金設置 및 使用) ①電化事業에 所要되는 基金은 서울特別市費(以

下 市費基金이라 한다)로 設置한다

②市費基金은 未電化地域에 電化事業을 目的한 以外에는 이를 使用할 수 없다

第 3 條(工事費의 負擔) 電氣施設에 所要되는 工事費의 負擔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配電施設工事費는 電氣事業者의 自己負擔金額과 市費基金으로 充當한다 다만 需用者의 自己負擔能力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超過하는 資金을 市費基金으로 充當한다
2. 內線施設工事費는 需用者의 負擔으로 한다

第 4 條(工事費의 融資) 前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工事費中에서 市費基金은 이를 電氣事業者에게 融資한다

第 5 條(連帶債務) ①電氣需用者는 單位工事別로 市費基金의 償還에 關하여는 電氣事業者와 連帶債務를 진다

②電氣需用者의 建物을 取得한 者は 消納된 債務과 그 權利를 承繼한다

第 6 條(事業計劃) ①市長은 市費基金이 確保되었을 때에는 電化事業計劃書 및 資金計劃書를 作成하여 電氣事業者에게 通知한다

②市長은 電氣를 需用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第3條 第2號의 規定된 自己負擔金을 單位工事別로 一括하여 電氣事業者에게 1月以內에 預置한 것을 通知한다

③電氣를 需用하고자 하는 者は 前項의 通知를 받았을 때에는 그 期間內에 自己負擔金額을 單位工事別로 一括하여 이를 預置한後 그 證明書を 添付하여 電氣施設要請書를 單位工事別로 市長과 電氣事業者에게 各各 提出하여야 한다

第 7 條(事業計劃의 變更) ①電氣事業者는 前條의 事業計劃中에서 不得已한 理由로 因하여 工事가 不可能인 境遇에는 市長에게 그 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②市長은 前項의 事由가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事業計劃을 變更하고 그 工事를 他單位工事に 轉用指置할 수 있다

第 8 條(施工) 電氣事業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基金과 電氣施設要請書를

( 4 ) 조 례

받았을 때에는 事業計劃에 따라 遲滯없이 當該工事に 着手하여야 한다  
第9條(貸付期間) 市費基金의 貸付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市長이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電氣事業者와 協議하여 市費基金貸付期에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10條(利息과 償還) ①市費基金은 無利子로 貸付한다

②市費基金은 1年擱置하고 4年償還으로 한다 다만 前條但書에 依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償還金徵收) ①市費基金의 償還金은 電氣事業者가 每月分 電氣使用料를 徵收할때 이를 一括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②電氣事業者는 電氣需用者로 부터 徵收한 市費基金의 償還金을 年 4回로 區分하여 市長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③電氣事業者는 年 4回 電氣需用者別 市費基金 償還實績調書를 作成하여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2條(監督) 市長은 市費基金의 使用 및 工事施工狀況에 對하여 必要한 措置를 命하거나 審判의 提議를 電氣事業者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施行規則) 이 條例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년 4月 1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73號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 土地區劃整理費 特別會計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第18號 다음에 다음 行號를 新設한다

19. 華陽土地區劃整理事項

- 20. 倉洞土地區劃整理事業
- 21. 忘憂土地區劃整理事業
- 22. 驛村土地區劃整理事業
- 23. 延禧土地區劃整理事業
- 24. 金浦土地區劃整理事業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규 칙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曆 1967年 4月 3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1號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 水道事業特別會計條例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水道事業特別會計에 徵收官, 經理官, 物品管理官, 支出員, 收入員, 物品出納員과 分任者를 다음 區分에 依하여 各各 指定한다

1. 本 則

- 徵 收 官 水道局長
- 分 任 徵 收 官 業務課長
- 經 理 官 水道局長
- 分 任 經 理 官 經理課長
- 物 品 管 理 官 經理課長
- 支 出 員 經理課經理係長
- 收 入 員 業務課課徵係長
- 歲入歲出現金出納員 經理課課速係長
- 物 品 出 納 員 經理課管財係長
- 分任物品支出員 名簿主務者

( 6 ) 규 칙

臨時前渡資金出納員 市長이 必要에 따라 指定

2. 事業所

分任 徵收官 事業所의 長

分任 經理官 事業所의 長

分任 物品管理官 事業所의 長

分任 支出員 事業所의 庶務係長

(庶務係長이 없는 所는 庶務主務者)

分任 收入員 事業所의 收納係長 및 資材係長

分任 物品出納員 事業所의 庶務係長 및 資材係長

(庶務係長이 없는 所는 庶務主務者)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10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2號

서울特別市立病院(價條例施行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立病院收價條例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1. 免除對象者(無料者) 「마」 다음에 「자, 아, 자, 차」를 다음과 같이 挿入하고

사. 重要行事に 參席하던 公傷者

아. 都市計劃事業執行으로 인한 被收用者側の 負傷者

자. 市에서 直營하는 作業現場에 從事하던 公傷者

차. 國防部산하에서 發行하는 派越將兵 戰死者遺家族證明 또는 確認證明 所持有 者 다만 家族의 範圍는 同一戶籍內에 있는 直系尊卑屬(그 配偶者包含) 및 弟妹로 한다

同條 2. 減額對象者(實費者)

가. 中 「要救護對象者」 다음에 「또는 零細民」을 挿入하고

나. 中 「派越將兵戰死者家族」 및 을 削除한다

附 則

이 規則은 1967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 機構改進黨議會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12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3號

서울特別市機構改進黨議會規則

第1條(設置) 서울特別市의 機構을 合理的으로 改進黨하기 爲하여 서울特別市 機構改進黨議會(以下審議會라 한다)을 둔다

第2條(職務)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1. 機構의 不備 또는 問題點調査
2. 首都行政需要에 對應하는 機構展望研究
3. 統一 서울에 對應하는 機構改進黨의 具體的 方案
4. 機構改進黨 및 法律案作成審議
5. 前各條에 隨伴되는 諸般問題審議

第3條(組織) ①審議會에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委員 20人以內로 組織한다

②委員長은 第1副市長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官과 內務局長이 된다

③委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의 提議으로 市長이 任命한다

④審議會의 자문에 應하기 爲하여 顧問2人을 두되 委員長의 提議으로 市長이 委屬한다

第4條(委員長 및 副委員長の 職務) ①委員長은 審議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여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5條(會議) ①審議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審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第6條(研究課) ①審議會의 管掌事項을 分掌遂行하기 爲하여 研究課을 둔다

② 研究班員은 市公務員中에서 委員長의 提議으로 市長이 任命한다

③ 研究班員은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調査研究事務에 從事하고 審議會 議에 出席하여 所管事務에 對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7條(補助) ① 審議會는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機關에 對하여 資料의 提出또는 人力의 支援을 要求할 수 있다

② 關係機關의 長은 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他に 優先하여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8條(報告 및 建議) ① 審議會에서 決定된 事項에 對하여는 市長에게 建議하여야 한다

② 研究班에서 調査, 研究된 事項에 對하여는 委員長에게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第9條(幹事) ① 審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人事課組織管理係長이 된다

② 幹事는 審議會議에 參事하여 發言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規則은 西紀 1967年 4月 10日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職制中 改正規則는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19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4號

서울特別市職制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職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8條(土木課) ① 土木課에 土木係, 道路係, 特殊施設係, 橋梁係와 照明施設係를 두고 土木係長, 道路係長, 特殊施設係長과 橋梁係長은 土木技佐 또는 地方土木技佐로 照明施設係長은 電氣技佐 또는 地方機械技佐로 補한다

② 土木課의 係別分掌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土木係



- 가. 土木에 關한 調査, 計劃 및 資料의 綜合整理와 關聯工事計劃의 調整
- 나. 一般道路, 道路工作物 및 附屬物의 改良과 維持補修
- 다. 土砂道の 維持補修
- 라. 平面交叉部 街路의 改良 및 導流化施設에 關한 事項
- 마. 一般道路上的의 步行用 體橋의 設計, 施工監督과 維持管理
- 바. 高架道, 高速道路, 有料道路의 新設에 따르는 設計施行監督과 維持管理
- 사. 課內 他係主管에 屬하지 아니하는 事項

2. 道路係

- 가. 一般道路(國道, 特別市道, 都市計劃, 道路 및 準用道路) 및 道路工作物과 附屬物新設 擴張의 設計, 施行監督

3. 特殊施設係

- 가. 地下鐵道新設, 工事의 設計, 施工監督 및 維持管理
- 나. 地下道 및 地下廣場等 地下都市, 施設物의 設計, 施工監督 및 維持管理
- 다. 市街部道路上的의 獨立된 構造의 立體交叉路施設의 設計施工監督 및 維持管理

4. 橋梁係

- 가. 道路工事を 隨伴하지 않는 單位事業으로서의 橋梁, 工事의 設計, 施工監督
- 나. 大規模 橋梁工事와 이에 부수되는 接續道路의 設計 施工監督
- 다. 橋梁의 維持管理

5. 照明施設係

- 가. 街路燈과 道路附屬物의 照明施設 設計施工監督과 維持管理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건증 제정 규칙은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7년 4월 24일

②서울특별시규칙제636호

경찰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의 관할구역의전중 개정규칙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의」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 용산경찰서, 한남동 파출소의 위치」 「용산구 한남동 257의9」를 「용산구 한남동 357의50」으로 하고

서울 청량리 경찰서관 중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역전파출소	동대문구 건능동388	건능동 612-613, 617 620-622, 637 988중(재 건능동 2동 11동 9반)의 96-98, 101, 389, 393, 388중 건능동 2동 11동 9동 청량리동 172, 173-179, 182, 188, 176중 15동
청량리파출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신1	청량리동중(재 산 2-8, 150-205) 청량리동중 신1중(재 청량리 2동 3-9동) 청량리동중 180중 청량리 1동 11동, 12동 계기동 95, 96, 13중 계기동 1, 2, 3, 10, 11중 3동중 1반

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역전파출소	동대문구 건능동388	건능동 612-613, 617, 620-622, 537 388중(재 건능동 2동 11동 9반) 청량리동 172, 175-179 182, 188, 180중(재 청량리 2동 1동 청량리 1동 11, 12동) 181중(재 청량리 2동 2동) 계기동 95, 96, 13중(계기동 1동중 1, 2, 3, 10, 11, 12

		등 3등급 1번) 용두동 8, 9
청량리파울 스	동대문구 청량리동 166	청량리동파울(제 산 2-8 190-205) 산1(제 청량리 2동 3, 9동) 180(청량리동 11, 12동) 전농동 96-53, 101, 389, 393-511 388건농동 2동 11, 9동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雇傭員規程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2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7號

서울特別市雇傭員規程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雇傭員規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挿入한다

③ 雇傭員은 그 直近上級監督者가 勤務成績이 不良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解僱시킬 수 없다

第1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 2(勤績加俸) 雇傭員의 勤績加俸은 地方公務員報酬 規程 第2條을 準  
用하되 總 8回를 超過하지 못한다

別表第1號「日給雇傭員의 職名 및 日給限界表」第3種欄中「警備員」 다음에  
「監視員, 보모」를 挿入하고

別表第3號「日給雇傭員의 俸給表」및

別表第4號「月俸雇傭員의 俸給表」를 各各 別紙와 같이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別表第3號 및 別表第

(12) 구 직

4號의 規定은 西紀1967年 4月 1日부터 適用한다

②(經過措置) 勤續加俸 3回를 받고 當該級類의 昇給期間을 超過한 雇傭員에 限하여 西紀 1967年 4月 1日字로 4回를 加給할 수 있다

③이 規則 施行當時 勤續加俸을 받고 있던 雇傭員의 勤續加俸額은 이規則에 依하여 西紀 1967年 4月 1日字 再發令하여야 한다

別表 3. 日給雇傭員의 俸給表

區 分 號 別	俸		給
	本 俸	職 資 手 當	計
1 號	150원	59원	209원
2 /	151	59	210
3 /	152	60	212
4 /	153	60	213
5 /	154	60	214
6 /	155	60	215
7 /	155	60	216
8 /	157	61	218
9 /	158	61	219
10 /	159	61	220
11 /	160	61	221
12 /	161	62	223
13 /	162	62	224
14 /	163	62	225
15 /	164	62	226
16 /	165	63	228
17 /	166	63	229
18 /	167	63	230
19 /	168	63	231
20 /	169	63	232

21	◇	170	64	234
22	◇	171	64	235
23	◇	172	64	236
24	◇	173	64	237
25	◇	174	65	239
26	◇	175	65	240
27	◇	176	65	241
28	◇	177	65	242
29	◇	178	66	244
30	◇	179	66	245
31	◇	180	66	246

別表 4. 月俸雇員의 俸給表

號 別	1 號	2 號	3 號	4 號	5 號
本 俸	3,900	4,150	4,400	4,650	4,900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 施行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7年 4月 26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38號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徵收條例施行規則

第 1 條(目的) 이 規則은 서울特別市立運動場使用料 徵收條例(以下條例라 한다)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使用許可) 運動場(體育館을 包含한다)의 使用許可事務는 다음 各條의 規定에 依한다

1. 體育以外的 目的으로 專用되는 使用 및 一般觀覽料 301원 以上을 徵收하는 競技의 許可는 當該運動場(以下體育館長을 包含한다)을 經由하여 市長이 許可한다

( 14 ) 규 칙

2. 一般觀覽料 300원 以下의 競技使用은 運動場長이 專行한다
3. 無料觀覽의 使用 및 競技時間延長使用(別紙第1號書式)은 運動場長이 專行한다
4. 商行爲上의 使用許可는 (別紙第2號書式) 運動場長이 專行한다
5. 運動場長은 重要하거나 異例的인 事項이라고 認定되는 것은 市長의 事前承認을 받아 處理하여야 한다

**第 3 條(適用範圍)** ① 條例第10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高等學校以下라 함은 學校 또는 學校의 體育團體나 教育關係機關 또는 大韓體育會나 그의 加盟 團體가 主備하거나 共備하여 參加者가 學生인 境遇에 限한다

② 條例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1回使用料라 함은 1日의 使用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③ 條例使用料表中 映畫撮影이 1回라 함은 條例에 規定된 使用時間으로 한다

④ 條例使用料表中 映畫撮影이라 함은 觀覽客이 없이 映畫製作會社에서 自己施設을 裝置하여 撮影할 때를, 競技撮影이라 함은 競技進行 事項을 撮影 하는 것으로 한다

**第 4 條(報告)** 運動場長이 運動場의 使用許可를 하였을 때에는 每週分을 翌 週 火曜日까지 使用料精算書(別紙 第3號書式)正副本을 作成하여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 競技가 數週에 亘릴 때에는 競技終了後 報告한다

**第 5 條(使用料의 收納)** ① 運動場使用料는 歲入歲出外 現金出納員이 收納保管하고 使用當일에 歲入決算하여 늦어도 翌日 午前까지 市金庫에 拂入하여야 한다

② 使用料의 分納은 3日間隔으로 할 수 있으며 第1回의 納付는 專用日 7日 前に 2回分부터는 各分納期日 前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③ 分期制에 依한 使用料의 分納은 基本額을 基準으로 하고 雨天等 豫備日의 使用料는 使用當日 午前까지 徵收한다

④ 市長이 許可한 使用料는 運動場長이 徵收한다

**第 6 條(無料入場)** 無料入場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限하여 運動

場長이 許可할 수 있다

1. 運動場使用料一切을 無料로 하는 政府 및 國慶 吊 記念行事 市民慰安會 參席者
2. 各級學校單位體育大會의 專用學校學生
3. 大會競技의 主催者 擔當任員 出戰選手 新聞社 通信社 放送局의 體育部出入記者
4. 市長이 許可한 者

第7條(贈覽券) 觀覽券의 發賣場所는 運動場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發賣場所責任者는 運動場長의 同意를 얻은後 賣上 價를 主催者에 인도하여야 한다

第8條(招請狀) ① 專用者는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는 市長의 許可를 얻어 觀覽하고자 하는 者를 無料入場하도록 招待할 수 있다

② 招請狀은 發行前에 當該運動場長의 檢印을 받아야 하며 그 觀覽券는 專用者가 負擔하여야 한다

③ 有料觀覽에 있어서의 招請狀은 該當競技의 最高觀覽料을 基準으로 觀覽料을 徵收하고 無料觀覽에 있어서의 招請狀은 入場料로 한다

第9條(贈覽券) ① 一切의 觀覽券의 印刷는 專用者 負擔으로 하고 運動場長의 檢印을 받아 發賣하여야 한다

② 觀覽券에는 觀覽料의 內譯을 明示하여야 하며 專用者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市長의 許可를 받아 다음과 같이 區分할 수 있다

1. 特別券
2. 一般券
3. 軍醫, 學生券
4. 招待券(招請狀)
5. 團體券(一般 및 學生)

③ 運動場長은 檢印된 觀覽券의 殘票을 1年間 保管하고 回收되는 觀覽券은 運動場長이 受領하고 競技終了와 同時에 專用者 立會下에 소각하여야 한다

( 16 ) 규 칙

第10條(職權取消) 運動場長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既に許可한 使用日을 職權으로 取消할 수 있다 雨天으로 因하여 施設物維持管理가 困難할 때

② 專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하였을 때

第11條(賠償金) 場長은 施設用品의 破損 滅失에 對한 賠償은 原狀復舊의 實費를 徵收한다

第12條(委任者申告) 專用者는 使用日前까지 觀覽券取扱 및 金錢出納員을 選定하여 委任狀(別紙4號書式)을 當該運動場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出入證發行)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務를 圓滑히 遂行하기 爲하여 關係公務員에게 出入證(別紙 第5號書式)을 發行할 수 있다

第14條(非商行爲의 使用料免除) 競技實況만을 目的으로한 非商行爲에 對한 放送中繼에 있어서는 使用料를 받지 아니한다

第15條(使用料의 減免事由) 市長은 다음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動場場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1. 世界的인 規模의 競技(世界選手權大會)
2. 亞細亞 또는 東洋의 1 規模의 競技(亞細亞 또는 東洋選手權大會)

第16條(入場券等 規格) 入場券 練習券 超過料徵收證은 別表와 같다

第17條(審査委員會 構成) 運動場使用料審査委員會에 委員長은 內務局長 委員은 總務課長 豫算課長 및 監査官이 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別紙第2號書式

競技時間延長使用許可願

大會名

競技名

基本競技時間

超過競技時間

上記와 같이 競技時間을 超過使用코자 하오니 許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西紀 19 年 月 日

主 催 者 印

競技時間	自	時	分
超過時間	至	時	分

上記와 같이 確認함

確認者

競技主催者

競技場勤務者

場長 貴下

別紙第2號書式

라디오  
텔레비 放送中繼申請書

競技名			
競技日時			
中繼料納付額	금 주금		
電氣使用與否	使用	自家發電	
上記와 같이 申請함			
西紀 19 年 月 日			
放送局			印
姓名			印
主催者承諾			
主催名			印
長 貴下			

(18) 冊 式

別紙第3號書式

1. 競技名
2. 使用期間
3. 精算總額

使用料精算書

區	分	金額	算出基礎	施設名	備考
賦 額 制	特別觀覽券 一般觀覽券 軍醫學生券 一般團體券 園體卷 商行為使用料 小計				
	施設使用料 設備使用料 時間超過使用料 入場料 小計				

別紙第4號書式

委任狀

大會名

今般大會期間中 의 理事에게 現金出納 및 事務取扱  
一切를 委任하나이다

西紀 19 年 月 日

住 所


團 體 名

代表者姓名

長 貴下

0207

別紙第5號齊式

第 號	運 動 場	寫 實
姓 名	出 入 證	
		
	西紀 19 年 月 日	
	서울特別市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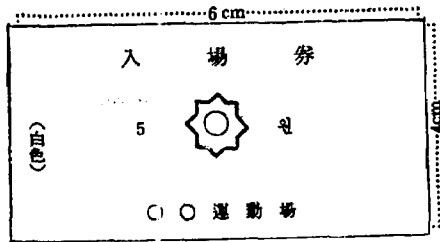
(裏面)

1. 本證은 他人에게 讓與할 수 없다.
2. 本證을 紛失하였을 때는 即時申告하여야 한다.
3. 本證所有者가 出入하고자 할 때는 正當한 事由없이 不應할 수 없다.
4. 本證은 運動場出入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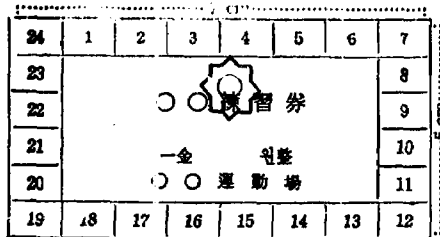
(20) 규 칩

別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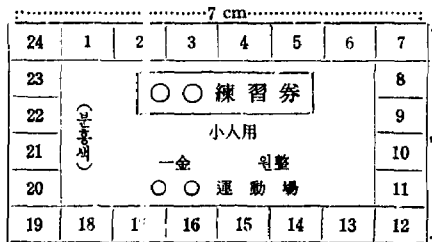
1. 入場券



2. 練習券(陸上, 蹴球, 棒球, 排球, 卓球)



3. 練習券(스케이트, 水泳場)



7 cm							
24	1	2	3	4	5	6	7
23	○○ 練習券					8	
22	線	大人用				9	
21	色	一全	원整				10
20	○○ 運動場					11	
19	18	17	16	15	14	13	12

4. 超過料徴收證

6 cm	
超過料徴收證	
一全	원整
練習超過料	
○○ 運動場	

5. 練習券(裏面)

注 意
一、練習券が爲すは入場券と本練習券を交付するものと異なるが、提示하여야 함
二、本練習券은 一回二時間(120分)간
三、本練習券은 退場한 뒤의 수보인의 外 使用하여야 하며 練習券을 超過한 때에는 前項의 依하여 復出한 使用料의 반을 追加納付하여야 함
四、本練習券은 他人에게 引讓 또는 貸與할 수 없음

사 령

◎1967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이사관	조	성	래
제경부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 근무를 명함			
양묘장 지방입업기사	허	형	식
산업국 녹지와 보호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사방관리소 지방입업기사	이	근	염
사방관리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경	호	진
기획관 종합기록담당관에 보임			
관광윤수국	장	난	진
복직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사무과 사무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제경사무관	김	영	두
통계관 통계조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사	김	장	인
제1도장 장장 직무대리를 명함			
	신	기	준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외무 기좌에 임함			
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보건소 방역과장에 보임			
서대문구보건소 지방외무기좌	이	형	삼
지방외무기좌에 보임			

4호봉을 금함			
용산구 보건소장에 보함			
시민회관 지방기계기사	홍	종	석
시민회관 기술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감사관보좌 지방재경주사	김	경	호
경리과 경리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구회정리과 지방토목기사	김	중	상
구회정리과 환지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하수과 지방토목기사	김	영	식
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겸시설과 지방토목기사	허	희	완
계획과 지역계획계장 직무대리를 명함			
건설국토목과 지방토목기사	은	남	라
남부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를 명함			
수유도지구회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유	병	은
도목시험소 토질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도목과결제과 지역계획계장토목기사	홍	학	영
서부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직무대리를 명함			
구회정리과 환지계장 지방토목기사	김	진	석
구회정리과 계획계장에 임함			
동부건설사업소장지방토목기사	김	진	현
동부 토지구회정리사업소 소장에 임함			
도목시험소 토질과장 지방토목기사	김	진	유
주택과 택지조성계장에 임함			
종로보건소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고	동	환
중구보건소 위생과장에 임함			
공보실 공청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유	근	승
종로구보건소 위생과장에 임함			

(24) 사 령

농림부 진출을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서기보 김	순	결
행정서기보에 임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순	결
7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문	무
지방비서관(3급 을 상당)에 임함			봉
4호봉을 급함			
시장실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수도국 행정부이사관 김	원	하
행정이사관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수도국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6일			
서대문병원 약제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중부병원 지방약무기사 임	재	승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중구보건소 조진부지방간호기원보 이	복	환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임	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김	광	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직을 명함			
◎1967년 4월 7일			
조건부 행정서기보에 임함		이	건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혁
공업과 지방행정주사보	민	병	구



세경과 지방사세주사 이	종	상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0일		
조건부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내무국 행정과 근무를 명함	경	이 간
조건부 지상제경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1일	전	이 중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의소장에 보함 ◎1967년 4월 12일	경	구 원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수	경 수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보	한	옥 자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원보	리	내 영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한 관리과 지방행정서기보	이	원 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동모병원 지방보건기사	강	인 근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1967년 4월 13일		
용산동익전당포 지방행정사무관	한	준 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수도국 지방도목기리	윤	경

(26) 사 명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 건축과 지방건축기과 한 기 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감봉 1월에 처함 ◎1967년 4월 14일			
총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청 자 경사관보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용 평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5일			
기한부 공무원(조희승 유직) 간증)에 임함 급유류 7호봉을 급함 5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기 빈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국립경찰병원 이 선 열		
운수사업과 지방행정주사보 황 상 하 동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길 석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창 호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재 학 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황 한 굴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재경서기 김 명 숙			
서부병원 근무를 명함 분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이 길 훈 분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은 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분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남	상	복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박	익	현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	원	순	경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토목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박	석	근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원보	신	호	근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원보	이	건	우
류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요	익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윤	택	진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송	영	석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구획정리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문	학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토목기사	안	희	래
중구경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목시험소 지방토목기사	최	종	우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적기사	김	영	호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분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박	문	재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분광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조	한	구

( 28 ) 사 명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수유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최	희	중	급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면목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 이	창	성	
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면목토지구획정리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김	인	급	
구획정리과 근무를 명함			
	김	용	명
비서 (4급갑류상당)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제1부시장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기계기사보 조	봉	관
지방기계기사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조전부농촌지도원 이	중	제
농촌지도원에 임함			
7호봉을 급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7일			
	성동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신	영	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운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희	원
칠곡군 견출을 명함			
◎1967년 4월 18일			
	계획과 지방행정주사 최	상	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2월 20일			

		안	성	군	정	석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사세서기보에 입함							
효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농업기사보	오	공	석			
지방행정주사보에 입함							
4효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	공	기			
행거주사에 입함							
3효봉을 급함							
관방운수국 관공과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분	병	일			
성동구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5일	남부병원 지방조무수	김	방	목			
서대문 병원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6일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김	호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1967년 1월 11일자 경제저분(전체)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							
	계획과 조전부지방도목기원보	강	희	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관리동태수지사무소 지방전기보조수	고	광	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도목기원	노	경	선			
복직을 명함							

( 3 0 ) 사 명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7일	영등포구 지방행정주사 이	현	철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적기사보 유	재	성	
종로구 근무를 명함	보건과 지방행정주사 김	경	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경함				
◎1967년 4월 1일	지방사세주사보 申	榮	植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2월에 처함				
◎1967년 4월 3일	총무과 4등급 지방조무(운전)원 문	봉	식	
	승인출장소 지방능업기원 구	연	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6일	삼양제1동 지방행정서기 金	亨	培	
	정능제3동 지방사세서기보 趙	顯	大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15일	종암동 지방행정서기 朴	贊	百	
인수동 근무를 명함	정능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李	胤	浩	
길음동 근무를 명함	길음동 지방행정서기보 文	洪	植	
장석동 근무를 명함	인수동 지방행정서기보 金	尙	彦	
정능제2동 근무를 명함				

장석동 지방행정서기보	王	學	徽
중앙동 근무를 명함			
건설과 지방행정서기	全	병	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산업과 입업지원보	박	승	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지방건축기사보	이	문	리
건설과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18일			
청소과 지방행정주사	이	복	동
서내인 218-2290(67년 4월 13일) 「공무원 경기 호봉 승급명령 취소통보」로 인하여 66년 7월 1일자(경기승급) 근무가봉 1,000 원급을 동일자로 취소함			
◎1967년 4월 19일			
승인출장소 입업지원	김	원	환
승인출장소 입업지원보	鄭	命	淳
복직을 명함			
승인출장소 근무를 명함			
노태출장소 지방입업지원보	李	命	杰
복직을 명함			
노태출장소 근무를 명함			
◎1967년 4월 20일			
성북구송천동 조진부지방행정서기보	元	炳	熙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67년 4월 4일			
총무과 지방조무수(타자)	이	영	자
신공터제2동 지방행정서기보	강	수	동
원이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호

서울특별시 고시제1094호중 3(기타)항 가(시설점사)호의 「월1회이상」을 「년4회이상」으로 개정한다

서기 196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서울특별시고시제20호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종류	로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특별 시도	사근-행당선			자. 사근동산 74 14 지. 행당동산 6 6		835미터	한양대학교	일반통행에 용하고자 하는 것임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1호

자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성분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유

자료성분 등록사항(변경후)

등록 번호	공장명칭 및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 료 의			사 료 의 성 분 류				유 효 기 간
			종류	명칭	용도	조암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25	시추철 강마포 동63-3	송남현	금 주용 비 합사 료	중추사 료	중추용	%이 16	%이 3	%이 7	%이 10	67. 4. 27부터 69. 4. 26까지



27	서울시 축협사료공장	송명현	유추배합사료	생추사료	유추용	19	3	6	9	◇
2	중앙축산사료정성동구서인동 175-12	양태현	중추배합사료	No. 77 배합사료	중추용	16	3	7	10	◇
73	◇	◇	유추사료	No. 35 유추사료	유추용	19	3	6	9	◇
74	◇	◇	중추사료	No. 75 유추사료	유추용	16	3	7	10	◇
32	서부사료공사 마포구서보동 371-10	경규봉	신관제 배합사료	신관제 배합사료	신관제 배합사료	15	25	7	11	◇
55	◇	◇	임신기 배합사료	임신기 배합사료	임신기 배합사료	14	3	13	13	◇
44	서부사료공사 마포구서보동 371-10	경규봉	중추배합사료	중추사료	중추용	16	3	7	10	◇
45	◇	◇	유추배합사료	유추사료	유추용	19	3	6	9	◇
49	한국사료공정성동구서인동 77	김태홍	유추배합사료	No. 35 유추배합사료	유추용	19	3	6	9	◇
61	◇	◇	중추배합사료	중추사료	중추용	16	3	7	10	◇
62	◇	◇	유추배합사료	유추배합사료	유추용	19	3	6	8	◇
83	◇	◇	중추배합사료	유추배합사료	중추용	17	3	7	10	◇
67	영육농장사료정성동구서인동 528	김영희	유추배합사료	유추배합사료	유추용	19	3	6	9	◇
66	◇	◇	중추배합사료	유추 1호	중추용	17	3	7	10	◇

( 34 ) 고 시

64	〃	〃	영림 11백 부표	영제비 합사표	영계용	17	3	6	9	◇	
85	〃	〃	중추배 합사표	영옥 합사	중추용 2	16	3	7	10	◇	
22	내산 51	사표공 구본영	이준근	유추배 합사표	별리 합사	유추구	19	3	6	9	◇
9	〃	〃	중추배 합사표	중추사 표	중추용	16	3	7	10	◇	
53	중앙 이내 33	사표공 구제기	정철표	유추사 배표	유추용 유추용	19	3	6	9	◇	
54	〃	〃	중추배 합사표	중추사 표	중추용 중추용	16	3	7	10	◇	
47	행동 회시 양평	사표공 구희 4가80	김복순	유추사 배표	유추복 합사표	유추용	19	3	6	9	◇
48	〃	〃	중추배 합사표	중추복 합사표	중추용	16	3	7	10	◇	
49	〃	〃	대추배 합사표	대추복 합사표	대추용	14	3	7	10	◇	
50	〃	〃	심계 합사표	심호배 합사표	심관계	15	2.5	7	11	◇	
69	한일 상업 상업	사표공 구희 350-6	차무용	유추사 배표	유추희 합사표	유추용	19	3	6	9	◇
70	〃	〃	중추배 합사표	중추사 표	중추용	16	3	7	10	◇	
77	홍성 2가323	사표공 구희 수동	정내원	유추사 배표	유추희 합사표	유추용	16	3	7	10	◇
78	〃	〃	유추용 사표	유추용 2호	유추용	19	3	6	9	◇	

87	◇	◇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7	3	7	17	◇
88	◇	◇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9.5	3	6	9	◇
89	◇	◇	산관계 산관계 산관계	산관계 산관계 산관계	15	3.1	5	15	◇
90	◇	◇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6.5	3	7	10	◇
91	◇	◇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9.2	3	6	9	◇
79	대동 동72-1	신사도 공산 구회 각승면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9	5	6	9	◇
80	◇	◇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사	중주용 중주용 중주용	16	3	7	10	◇
계	11개공장	11	36중						

◎서울특별시고시제22호

사방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인 욱

1. 해제지

위 야 소 개 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한면적	토거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상 당	비고
성동	명일	산67	임야	0.8700	0.8700	0.8700	—	동국학원, 김한기	
◇	◇	68	◇	1.4100	1.4100	1.4100	—	◇ ◇	

2. 해제사유

본임지는 서기 1957년도 사방지정지로 사방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타사업에 피해가 없으므로 해제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51호

1. 서울특별시 고시제914호 66년 11월 6일) 고시된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표제 다음과 같이 토지 수용법 제20조에 의거 세목 공고함

가. 공고내용 : 별첨 내역과 같음

나. 공고장소 : 시청 제1관

다. 공고기간 : 자 서기 1967년 4월 17일

지 서기 1967년 4월 26일 (10일간)

서기 196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士 地 調 査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收用坪數	所 有 者		備考
					住 所	姓 名	
永登浦區登村洞	215-9	E1	19	0.9	永登浦洞4街23-40	서상진	
◇	215-8	..	123	14	◇	◇	
◇	214-1	..	431	45	明倫洞4街206-14	이효덕	
◇	55	林	3,480	30	楊平洞1街31-4	유한용	
◇	53	..	1,680	150	乙支路3街186	황경식	
◇	52-7	..	2,190	240	新吉洞89-70	손원학	
永登浦區禾谷洞	2-7	田	769	13	登村洞397	이상하 외1인	
◇	2-6	..	728	0.9	◇	한길수	
計	8			493.80			

◎서울특별시공고제52호

서기 1967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4호로서 지정한 서울 도시계획사업 쪽도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에정지를 벌칠 도면 및 조서와 같이 일부변경 지정합니다

별첨 도면 및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성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종람에 공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53호

응시자격 정지처분 공고

서기 1967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시행제1회 5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응시한 다음 사람은 합격율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67년 3월 26일-69년 3월 25일) 이령에 의한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처분합니다

다 음

응시자격 정지처분과 명단

서기 196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직 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본격	현 주 소
행정직	김 용 배	남	43. 6. 17	충북	서울서대문북아현209의28
◇	박 유 순	여	48. 9. 9	경기	서울영등포상도산47(9-9)
◇	김 영 업	남	32. 12. 1	◇	서울영등포영314의 (9-5)
◇	기 흥 기	◇	46. 9. 28	서울	서울동대문전농519 2-6
◇	서 용 기	◇	34. 8. 20	◇	서울동대문장신9의3(1-7)
◇	장 진 중	◇	42. 10. 1	충남	서울영등포대방60(16-2)
◇	강 의 중	◇	37. 12. 23	◇	서울영등포대방44의199(1-2)

( 38 ) 공 고

◇	조 성 익	◇	37. 6. 25	서울	서울서대문내조74의153
◇	신 명 균	◇	46. 2. 21	전남	서울종로통인147의27(2-1)
◇	원 용 만	◇	36. 5. 1	경기	서울영등포구로공영주택1643
◇	김 명 철	◇	38. 5. 30	충북	서울영등포도립212

◎서울특별시공고제54호

건설부 고시제 738호(63년 12월 24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사업인 영등포-시흥간(구청앞 로타리-신래방동 삼거리) 도로공사 구역내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영등포-시흥간(구청로타리-신래방동 삼거리간)
2.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공고 별지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土 地 調 査

連番	分割前表示		地目	分割後表示		所 有 者		備考
	地番	坪數		地番	坪數 收用坪	住 所	姓 名	
1	永登浦585-1	664	宅	永登浦洞 585-20	28	東仙洞315	金 祥 洙	
2	◇ 585-9	792	◇	◇ 585-21	81	영등포동570	李 南 蒼 外7人	
3	◇ 585-15	7	◇	◇ 585-22	5	◇ 577	李 炳 順	
4	◇ 585-13	2	◇	◇ 585-23	1	◇	◇	
5	◇ 577-16	19	◇	◇ 577-79	0.6	◇ 577-16	姜 大 永	
6	◇ 577-52	37	◇	◇ 577-81	0.8	◇ 2가202	崔 女 龍	
7	◇ 577-51	23	◇	◇ 577-80	0.9	◇ 577	金 應 鎮	
8	◇ 580-4	104	◇	◇ 580-103	2	◇ 580-4	에수교장노 회永登浦再 建敎會	
9	◇ 581-9	19	◇	◇ 581-15	10	◇ 581	朴 贊 逵	
10	◇ 582-3	9,154	◇	◇ 582-17	852		東洋麥酒 會 社	
11	◇ 582-4	4,763	◇	◇ 582-18	145		◇	

12	◇ 582-5	913	◇ ◇ 582-19	114	◇	
13	◇ 602-3	17	◇ ◇ 602-3	16.5	永登浦山1	金 昌 洙 外19人
14	◇ 602-4	43	◇ ◇ 602-4	34	◇	
15	◇ 602-7	42	◇ ◇ 602-123	21	◇	
16	◇ 602-35	69	◇ ◇ 602-35	48	◇	
17	◇ 602-36	51	◇ ◇ 602-36	31	◇	
18	◇ 602-37	38	◇ ◇ 602-117	2	◇	
19	◇ 602-40	723	◇ ◇ 602-40	352	◇	
20	◇ 602-110	4	◇ ◇ 602-110	3	下往十里465	大韓佛敎 高麗實錄 持財編 林 魯 俊
21	大方洞262-8	159	大方洞262-2	29	大方洞山66	
22	◇ 261-1	51	◇ ◇ 261-13	24	永1가96	朱 賢 五
23	◇ 261-6	60	◇ ◇ 261-16	25	大方洞261-6	許 鎮 玉
24	◇ 261-12	60	◇ ◇ 261-17	34	◇ 261	鄭 錫 贊
25	◇ 261-40	57	◇ ◇ 261-15	22	◇ 261-4	黃 善 一
26	◇ 261-3	100	◇ ◇ 261-14	70	新吉洞110-6	黃 大 植
27	◇ 262-4	49	◇ ◇ 262-47	7	◇ 144	崔 志 澤
28	◇ 262-40	68	◇ ◇ 262-53	2	◇	
29	◇ 262-5	310	◇ ◇ 262-48	77	永3가90	金 池 雲
30	道林洞48-3	11	道林洞48-20	4	道林洞48	金 勉 英
31	◇ 48-1	29	◇ ◇ 48-1	17	◇	
32	◇ 48-4	41	◇ ◇ 48-4	34		李 虎 相
33	◇ 48-6	9	◇ ◇ 48-23	0.9		
34	新吉洞山 68-8	5林	新吉洞山 68-14	1	道林洞6	李 丙 昌
35	◇ 山68-2	1,133	◇ 山68-15	125	◇	
36	◇ ◇ 81-1	60	◇ ◇ 81-2	27	孔應洞	李 東 俊
37	◇ ◇ 145-2	1,005	◇ ◇ 145-3	96		天主教會 財
38	◇ ◇ 146-2	305	◇ ◇ 146-3	11		
39	◇ ◇ 147-7	7,540	◇ ◇ 147-1	514	明洞2가1	天主教會
40	新大方洞 537-1	239	新大方洞 537-3	2	乙支路4가255	大韓佛敎 株式會社

41	◇ 539-1	333	◇ ◇ 539-3	11	◇	◇
42	◇ 542-2	166	◇ ◇ 542-6	0.6	鎌上洞166-169	金福 戌
43	◇ 540-1	159	◇ ◇ 540-3	137	新大方洞541	沈鴻 雲
44	◇ 541-3	68	◇ ◇ 541-5	0.5		李源 永
45	◇ 557-27	97	◇ ◇ 557-32	2	大方洞13-22	尹用 坦
46	◇ 557-26	95	◇ ◇ 557-38	22	新大方洞 557-26	鮮于昌 源
47	◇ 557-24	77	◇ ◇ 557-37	37	◇ 557-24	全昌 麟
48	◇ 557-23	79	◇ ◇ 557-36	37	◇ 176-1	金昌 周
49	◇ 557-22	96	◇ ◇ 557-35	36	◇ 557-22	梁台 錫
50	◇ 557-21	63	◇ ◇ 557-34	35	青坡洞27-8	金義 泰
51	◇ 557-19	81	◇ ◇ 557-33	52	新大方洞 557-19	黃昌 浩
52	◇ 557-31	54	◇ ◇ 557-39	42		洪喆 裕
53	◇ 558-15	28	◇ ◇ 558-20	18	◇ 558-15	方丁 順
54	◇ 558-1	52	◇ ◇ 558-19	8	◇ 558-3	權玉 順
55	新道林908-1	81	新道林908-1	80.2	本洞	高興 玉
56	◇ 908-2	47	堡 ◇ 908-8	3	嘉松洞15	成泰 仁
57	◇ 908-3	120	◇ ◇ 908-3	21	◇	◇
58	◇ 908-4	137	◇ ◇ 908-4	23	◇	◇
59	◇ 909-2	2,716	◇ ◇ 909-3	153	厚岩洞244-90	朴治 鉉
60	◇ 910-2	182	◇ ◇ 910-2	14	◇	◇
61	◇ 912-1	58	堡 ◇ 912-1	20	◇	◇
62	◇ 912-2	64	◇ ◇ 912-2	9	◇	◇
63	◇ 912-15	44	◇ ◇ 912-15	3	◇	◇
64	◇ 912-18	46	◇ ◇ 912-18	11	◇	◇
65	◇ 912-20	44	◇ ◇ 912-20	11	◇ 244-20	◇
66	◇ 912-23	44	◇ ◇ 912-21	21	◇	◇
67	◇ 912-25	38	◇ ◇ 912-25	24	◇	◇
68	◇ 912-26	20	◇ ◇ 912-26	19	◇	◇
69	◇ 918-46	24	◇ ◇ 918-46	4	◇	◇



70	◇ 918-48	39	◇ 918-48	21	◇	◇
71	◇ 918-49	46	◇ 918-49	29	◇	◇
72	◇ 919-2	1,119	◇ 919-30	47	北阿崎洞1-46	朴 昇 奎
73	◇ 948-1	3,606	◇ 948-3	423	新堂洞357-6	朝鮮製油工 業株式会社
74	◇ 962-8	166	◇ 962-10	37	◇	◇
75	新大方536-2	67	新大方536-4	40	楊平郡雲金面 介百里117	李 福 永
76	◇ 541-1	7,547	林 ◇ 541-6	536	光禄町一丁目 232	李 善 永
77	新道林910-1	646	新道林910-1	114	孝昌洞127	朴 觀 厚
78	大方洞264-3	385	大方洞264-11	120	太3-190	安 鈴 子
79	◇ 264-10	158	◇ 264-11 264-13	16 0.7	◇	◇
80	◇ 264-9	252	田 ◇ 264-14	8	太228	林 之 熙
81	◇ 266-2	119	带 ◇ 266-9	39	大方洞223	林 貞 承
82	◇ 266-3	593	◇ 266-10	30	◇ 113	林 珠 用
83	◇ 266-3	301	◇ 266-14	137	◇ 190-136	李 悅 應
84	◇ 266-8	70	◇ 266-15	45	道和洞4-6	金 炳 文 外1人
85	◇ 266-12	297	◇ 266-16	127	◇	◇
86	◇ 266-13	98	◇ 266-17	27	◇	◇
87	◇ 266-5	54	带 ◇ 266-19	52	大方洞236	崔 斗 澤
88	◇ 266-4	58	◇ 266-18	34	◇	◇
89	新吉洞424-3	406	田 新吉洞424-5	13	太7-164-9	趙 濟 九
90	◇ 425-4	526	果 ◇ 425-16	40	太4-182	崔 興 良
91	◇ 425-5	72	◇ 425-17	23	太5-132	金 永 吉
92	◇ 425-10	113	◇ 425-18	16	新吉洞475-10	金 賢 泳
93	◇ 425-11	129	◇ 425-19	10	太5-132	金 永 善
94	◇ 425-14	365	◇ 425-20	23	◇	◇
95	◇ 445-7	397	带 ◇ 445-12	61	新吉洞496-7	趙 順 在
96	◇ 445-11	257	◇ 445-14	26	◇	◇
97	◇ 445-2	137	◇ 445-13	9	◇ 232	李 敏 紅
98	◇ 446-1	307	田 ◇ 446-4	16	◇	◇

99	◇ 446-3	150	◇ 446-5	2	永1가121	丁奎昶
100	◇ 448-3	731	◇ 448-3	16	元曉路278가	李盛道
101	◇ 448-6	58	◇ 448-9	9	◇	◇
		河川	◇ 448-11	10	◇	◇
102	◇ 448-2	264	◇ 448-2	258		金月雙
103	永登浦洞581-5	27	永登浦洞581-13	9	永592-2	尹京勳
104	◇ 581-7	8	◇ 581-14	3	◇	◇
105	新吉洞221-13	6	新吉洞221-42	3		姜泰錫
106	◇ 221-7	20	◇ 221-38	3		鄭鶴煥
107	◇ 221-10	121	◇ 221-43	15	道林洞66	鄭奎寅
108	◇ 190-99	13	◇ 190-181	2	新吉洞190-97	姜信奎
109	◇ 190-100	26	◇ 190-182	0.5	◇ 366-109	韓千錫
110	◇ 190-101	30	◇ 190-183	3	◇	◇
111	◇ 190-102	15	◇ 190-184	3	新吉洞190-102	尹完永
112	◇ 190-103	24	◇ 190-185	6	◇ 190-103	宋鶴義
113	◇ 190-109	34	◇ 190-186	12	◇ 190-109	崔京雙
114	◇ 190-110	30	◇ 190-187	11	◇ 190-110	申斗憲
115	◇ 190-172	47	◇ 190-189	11	◇ 190-172	池在赫
116	◇ 190-174	22	◇ 190-190	19	◇ 190-174	吳得雙
117	◇ 190-171	34	◇ 190-188	0.8	◇ 190-171	李建洗
118	◇ 190-176	7	◇ 190-191	1	◇ 190-176	梁龍玎
119	◇ 192-155	52	◇ 192-171	9	◇	◇
120	◇ 192-156	21	◇ 192-172	6	◇ 192-156	金興天
121	◇ 220-13	20	◇ 220-62	2	◇ 220-13	張泰洙
122	◇ 220-55	9	◇ 220-68	5	◇ 220	李丙澤
123	◇ 220-56	299	◇ 220-67	76	◇	◇
124	◇ 220-37	777	◇ 220-66	213	新堂洞308-13	金昌根
125	◇ 220-16	94	◇ 220-16	53	新吉洞220-16	吳光善
126	◇ 220-31	36	◇ 220-31	19	漢江路2가391	金錫恒
127	◇ 221-17	65	◇ 221-17	28	新吉洞220	金鍾鎭

128	◇ 220-20	75	◇	◇ 220-20	66	◇ 山68	林俊成
129	◇ 221-6	141	◇	◇ 221-8	93	◇ 221-8	姜泰錫
130	◇ 221-9	155	◇	◇ 221-9	144	◇	◇
131	◇ 221-5	100	◇	◇ 221-36	11	◇ 221-8	◇
132	◇ 221-6	98	◇	◇ 221-37	15	未6가126	姜在羽
133	◇ 253-36	10	◇	◇ 253-171	9	新吉洞253-36	李贊芳
134	◇ 253-50	41	◇	◇ 253-164	16	阿規洞187	崔聖勳
135	◇ 253-51	25	◇	◇ 253-165	10	未5가13	陶順芝
136	◇ 253-57	27	◇	◇ 253-168	10	◇	◇
137	◇ 253-58	31	◇	◇ 253-169	12	◇	◇
138	◇ 253-40	30	◇	◇ 253-172	10	新吉洞104	金武勳
139	◇ 253-41	33	◇	◇ 253-173	◇	◇ 253-41	權宰澈
140	◇ 253-42	33	◇	◇ 253-174	12	◇ 253-42	李在供
141	◇ 253-43	40	◇	◇ 253-175	3	◇ 253-43	元錫淑
142	◇ 253-47	43	◇	◇ 253-162	14	未1가96	朱益五
143	◇ 253-52	33	◇	◇ 253-166	11	未5가149	吳弘燮
144	◇ 253-35	51	◇	◇ 213-176	14	新吉洞253-35	徐丙福
145	◇ 253-48	40	◇	◇ 253-163	2	萬聖洞2가92	金秉一
146	◇ 253-45	43	◇	◇ 253-160	11	新吉洞253-45	金實河
147	◇ 253-53	36	◇	◇ 253-167	7	◇ 253-53	黃善一
148	◇ 253-46	47	◇	◇ 253-161	5	◇ 253	金武奉
149	◇ 253-119	723	◇	◇ 253-170	24	明洞2가1	財團維持 京畿地區 天主教會 崔聖勳
150	◇ 233-71	87	道	◇ 233-167	31	昌德洞560	崔聖勳
151	◇ 250-2	38	◇	◇ 250-5	8	新吉洞249	調 絃
152	◇ 251-3	44	◇	◇ 251-6	4	未5가306	金演宏
153	◇ 226-78	56	年	◇ 226-97	2	新吉洞226-97	朴元正
154	◇ 226-77	7	◇	◇ 226-26	6.4	◇ 山86-1	印泰發
155	◇ 226-17	20	◇	◇ 226-87	16	◇ 226-17	韓錫男
156	◇ 226-68	30	◇	◇ 226-88	26	◇ 226-68	尹炳煥

157	◇ 226-65	50	◇	226-89	6	◇ 山86-1	李漢顯
158	◇ 226-66	59	◇	226-90	15	道林洞	◇
159	◇ 226-69	8.1	◇	226-91	1.8	新吉洞223-4	趙廣衡
160	◇ 226-19	22	◇	226-92	9	◇	◇
161	◇ 226-20	20	◇	226-93	10	◇ 226-20	洪承云
162	◇ 222	124	◇	222-2	8	◇ 274	李鳳秀
163	◇ 223-1	44	◇	223-35	31	◇ 223-1	金甲洙
164	◇ 223-24	3	◇	223-36	2.5	◇ 223-24	邊旺成
165	◇ 223-24	3	◇	223-37	7	◇ 223-25	韓啓善
166	◇ 232-1	322	◇	232-63	5	永2가328	崔相善
167	◇ 232-50	237	◇	232-65	8	玉仁洞1-3	安廣洛
168	◇ 232-25	70	◇	232-66	6	孝子洞148	林松子
169	◇ 232-46	80	◇	232-67	8	永6가1	尹福根
170	◇ 232-42	153	◇	232-68	26	◇	◇
171	◇ 233-1	102	田	233-162	38	新吉洞274	金貴任
172	◇ 233-147	53	◇	233-163	23	◇	◇
173	◇ 233-148	75	◇	233-164	26	◇	◇
174	◇ 233-10	45	堡	233-165	20	◇ 233	朴昌俊
175	新吉洞233-11	25	◇	233-166	20	◇ 233-11	崔又善
176	◇ 234-6	143	◇	234-7	65	五肚洞200-1	趙泰鎭
177	◇ 223-32	90	◇	223-38	41	新吉洞87-5	南宮承永
178	◇ 223-28	61	◇	223-39	30	◇ 223-4	趙度衡
179	◇ 223-4	28	◇	223-40	16	◇	◇
180	◇ 223-5	40	◇	223-41	25	道林洞山5	金福洙
181	◇ 223-6	41	◇	223-42	37	新吉洞山87-8	全永文
182	◇ 223-33	27	◇	223-53	0.7	◇	◇
183	◇ 209-103	60	◇	209-146	38	道林洞山5	金裕洙
184	◇ 223-7	50	◇	223-43	19	新吉洞山89-3	李國誠
185	◇ 223-8	45	◇	223-44	26	◇ 223	李範鎔

186	◇ 223-14	52	◇ 223-45	31	阿規洞361-9	李 潤 周 外 2人
187	◇ 223-15	109	◇ 223-46	25	堂山洞411-9	李 相 出
188	◇ 223-16	174	◇ 223-47	31	永27332	尹 在 倫
189	◇ 223-17	119	◇ 223-48	25	◇	◇
190	◇ 223-18	147	◇ 223-49	137	永7747	朴 貞 善
191	◇ 223-19	45	◇ 223-50	28	阿規洞361-9	李 順 周
192	◇ 223-23	45	◇ 223-51	35	永572	延 天 津
193	◇ 223-21	90	◇ 223-52	85	◇	◇
194	◇ 232-19	77	◇ 232-69	46	◇	◇
195	◇ 232-39	61	◇ 232-70	33	新吉洞232	全 貞 男
196	◇ 232-40	61	◇ 232-71	30	◇	朴 勝 浩
197	◇ 232-15	107	◇ 232-72	53	◇ 232-15	李 敏 植
198	◇ 232-17	97	◇ 232-73	53	◇ 5	許 坪 坪
199	◇ 233-66	38	◇ 233-168	3	◇ 188	趙 在 龍
200	◇ 233-3	541	◇ 233-169	78	永6779	申 佑 均
201	◇ 233-54	146	◇ 233-170	29	大方洞210-2	柳 光 秀
202	◇ 233-12	102	◇ 233-171	3	新吉洞2-33	朴 在 賢 4人
203	◇ 233-154	57	◇ 233-167	0.7	◇	◇
204	◇ 234-3	18	◇ 234-8	15	◇ 233	康 道 默
205	◇ 234-4	79	◇ 234-9	36	◇	蔡 正 熙
206	◇ 235-12	9	◇ 235-19	1	永37486	金 露 萬 金 萬 永
207	◇ 235-9	62	◇ 235-20	17	◇	◇
208	◇ 250-1	28	◇ 250-4	20	新吉洞250	金 昌 順
209	◇ 250-3	114	◇ 250-5	59	◇ 249	金 鎮 鉉
210	◇ 249-17	27	◇ 249-110	10	◇	◇
211	◇ 29-39	40	◇ 249-111	3	◇ 249-39	李 英 子
212	◇ 249-45	56	◇ 249-103	39	◇ 249	夜 廷
213	◇ 249-46	42	◇ 249-104	35	◇ 249-46	姜 得 真
214	◇ 249-47	24	◇ 249-105	22	◇ 249-47	鄭 北 賢

215	◇ 249-35	53	◇	◇ 249-106	2	◇ 山120	張炳三
216	◇ 249-75	6	◇	◇ 249-107	0.2	利川郡府長 面禪保里317	羊致奉
217	◇ 249-77	40	◇	◇ 249-108	3	◇	◇
218	◇ 249-36	200	◇	◇ 249-109	60	新吉洞232	梁壽烈
219	◇ 254-3	508	◇	◇ 254-10	40	◇ 254-1	又新劇場
220	◇ 254-4	102	◇	◇ 254-11	15	◇ 271 ◇ 271	南英伊 南相氏
221	◇ 251-4	194	◇	◇ 251-7	37	永57306	金演溶
222	◇ 252-3	934	◇	◇ 252-4	34	◇	◇
223	◇ 249-37	60	◇	◇ 249-112	43	新吉洞249	鄭禮源
224	◇ 221-18	17	◇	◇ 221-18	17	◇ 山68	金學哲
225	◇ 221-30	2	◇	◇ 221-30	2	◇	◇
226	◇ 220-40	1	◇	◇ 220-40	1	◇	◇
227	◇ 220-38	12	◇	◇ 220-38	12	◇ 220	申景濬
228	◇ 220-39	10	◇	◇ 220-39	10	◇	◇
229	◇ 220-19	23	◇	◇ 220-19	23	◇	◇
230	◇ 220-17	18	◇	◇ 220-17	18	◇ 山68	金學哲
231	◇ 220-12	31	◇	◇ 220-12	31	◇ 220-12	李鎔萬
232	◇ 220-18	75	◇	◇ 220-18	75	道林洞26	李鶴秀
233	永582-13	17	◇	永582-13	17		尹京勳
234	新吉洞221-32	505	◇	新吉洞221-32	505		鄭奎寅
235	◇ 215-1	1,228	◇	◇ 215-1	1,228		李清洙
236	◇ 220-32	20	◇	◇ 220-32	20		申景濬
237	◇ 221-18	17	◇	◇ 221-18	17		金學哲
238	◇ 224-18	75	◇	◇ 224-18	75		李鶴洙
239	◇ 254-5	634	◇	◇ 754-5	634		南英伊 南相氏
240	◇ 254-20	194	道	◇ 254-20	194		南南亭
241	◇ 249-74	6	益	◇ 249-74	6		辛致奉
242	◇ 253-32	43	◇	◇ 253-32	43		金有演
243	◇ 226-18	1	◇	◇ 226-18	1		金完植

244	◇ 226-75	1	◇ 226-75	1	◇
245	◇ 226-16	13	◇ 226-16	13	◇
246	◇ 226-76	23	◇ 226-76	23	印 黎 哲
247	◇ 261-2	35田	◇ 261-2	35	申 救 鳳
248	◇ 264-2	47位	◇ 264-2	47	金 博 耀
249	新大方洞 559-2	47	新大方洞 559-2	47	車 令 石
250	◇ 559-8	30	◇ 559-8	30	康 榮 吉
251	◇ 559-3	16	◇ 559-3	16	◇
252	◇ 559-9	6	◇ 559-9	6	金 勝 煥
253	◇ 559-10	3	◇ 559-10	3	康 榮 吉
254	◇ 559-7	41	◇ 559-7	41	金 勝 煥
255	◇ 559-5	18	◇ 559-5	18	吳 在 天
256	◇ 559-4	33	◇ 559-4	33	◇
257	◇ 585-1	51	◇ 585-1	51	張 仁 杰
258	◇ 588-4	6	◇ 588-4	6	孫 昌 龍
259	◇ 557-25	25	◇ 557-25	25	鮮 于 烏 輝
260	◇ 557-28	15	◇ 557-28	15	朴 永 福
261	◇ 557-29	7	◇ 557-29	7	韓 光 相
262	◇ 557-30	4	◇ 557-30	4	梁 台 壽
263	◇ 557-4	71	◇ 557-4	71	李 孟 圭
264	◇ 558-8	78道	◇ 558-8	78	俞 成 根
265	◇ 556-4	2,812位	◇ 556-4	2,812	元 赫 壽
266	◇ 558-11	33道	◇ 558-11	33	俞 成 根
267	◇ 558-13	25位	◇ 558-13	25	◇
268	◇ 558-7	17	◇ 558-7	17	林 愛 益
269	◇ 558-6	27	◇ 558-6	27	◇
270	◇ 558-16	25	◇ 558-16	25	方 丁 日
271	◇ 558-3	4	◇ 558-3	4	朴 玉 順
272	◇ 558-9	4道	◇ 558-9	4	俞 成 根

273	◇ 558-10	2	◇ 558-10	2	林 張 結
274	◇ 558-14	6	◇ 558-14	6	俞 成 根

◎서울특별시공고제55호

서기 1949년 5월 13일 서울시 고시제34호로써 공고한바 있는 돈암 토지구조 경리지구 제2공구내 환지처를 중 1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변경된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무부 및 당해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판매인의 종람에 공한다

기

종 전 토 지				환 지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돈암	473-10	林野	51.00	三仙洞 1街	268	塗	42.00	三仙洞 1街	268	塗	39.70	이종환
◇	473-16	◇	3.00					◇	268-2	◇	2.30	고의승

서기 196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56호

조리사에 관한 규칙제8조의 개정에 의하여 1967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 1967년 5월 19일

나. 실기시험 : 1967년 6월 12일부터 1967년 6월 16일까지

다. 장 소 : 구립조리 기술학교(시내 중구 충무로 3가50)

2. 시험과목



가. 학과시험 : 위생법규, 공중보건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설치시험 : 한식, 양식, 중국식, 일본식중 1분야

3.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장이 증명하는 자
- (2) 음식점 영업중 1월을 통한 1일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 하는 식당, 여관, 호텔, 요리점, 카바레 또는 뷔-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 자

4. 응시절차

가.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장소

- (1) 1967년 4월 28일부터 1967년 5월 12일까지
- (2)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보건과

나.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통
- (2) 조리업무 종사자증명 (응시원서이면)
-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4)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1통
- (5) 사진 (3×4인치 탈모 상반신) 4매
- (6) 수수료 (시 수입증지) 200원
- (7) 수수료 (강습수료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8.00시까지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구(성, 흑

색볼펜, 만년필, 연필(외)와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식도, 위생복, 위생모, 행주, 손수건)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개시시간에 (09.00)시 지참한 자는 수험을 불허합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시 보전과(22.906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57호

1. 건물 표시 : 1) 서대문구 현저동 45-46 위복조 35명  
 2) 성동구 성수동 1가4 위저상목조 15명  
 3) 용산구 이촌동 303 지상 공동 변소 연와조 콩크리트조  
 건물 6명  
 4) 용산구 용산동 3가11번지 지상연와조 도단층건립6명  
 5) 성동구 신당동 2가 지공중변소 연와조 2.60명  
 6) 종로구 명륜동 4가 1번지 지상콩크리트 핑육계 3명  
 7) 성동구 원호동 421번지 세면트도단층 7.52명  
 8) 중구 장교동 7번지 지상 제1호 부류그조 도단층 2계명  
 건물 13명 2계명 13명  
 9) 동대문구 승인동 55의2 소재 시립양지희관창고 철거  
 자재

2. 입찰일시 : 서기 1967년 4월 28일

3. 입찰장소 : 당시 재무과 관제과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5. 입찰등록 : 서기 1967년 4월 27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 수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철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  
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  
약하였을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겠음

서기 196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58호

내무부고시 제23호(1952년 3월 25일)로 고시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인 필운동—중앙청간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명 : 필운동—중앙청간 도로공사

토지 및 지장물의 서목은 별지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토 지)

순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령 인
					주 소	성 명	주 소	
1	종로구 내자동	60-1	대	34.8	서종로1-22	이종구	한일은행	조상명
2	◇	67-3	◇	14	◇	◇		조상명

조 서(건 물)

순위	소재지	번지	구조	필수	소 유 자			관 령 인
					주 소	성 명	주 소	
1	종로구 내자동	60-1	목조아파트	11.18	서종로1-22	이종구	한일은행	
2	◇	◇	◇	7.33	◇	◇		
3	◇	67-3	◇	4	◇	◇		
4	◇	60-1 57-3	◇	12	◇	◇		

◎서울특별시공고제59호

감사원법 제31조 제4항 및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문 및 변상명령서를 이에 공시 송달함

서기 196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욱

공시송달

—금 壹百四拾七萬四仟八拾四圓 1,474,084원

위하에 대한 별지 서기 1967년 2월 21일자 장관제 호 감사원판정에 의하여  
서기 1967년 5월 20일까지 위 금을 서울특별시에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정·법중 채납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서기 196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최 병 두 귀하

1967년 장관제46호

관 강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분임수입원

지방행정주사보 최 병 두(원퇴직)

위의 자에 대한 서기 1965년 11월 15일 및 서기 1966년도 서울특별시 소관 주택비 특  
별회계 세입금 회령사건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함다

주 문

위의 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1,474,08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의 자는 서기 1965년 8월 15일부터 서기 1966년 10월 20일까지 서울  
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분임수입원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그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서기 1965년 10월 20일부터 서기 1966년 10월 20일까지  
사이에 그 직급에 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공영주택 년부상환금  
1,044,624원 등 간이주택 년부상환금 429,460원 계 1,474,084원을 수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세대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령비소하여 등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

이는 서기 1966년 12월 8일자 서기감 200-2,502호와 동년 12월 29일자 서도주 822.2-4502호 및 서기 1967년 1월 13일자 서도주 822.2-113호로 당원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장의 범죄발생 통보 및 관계중서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살피건대 위외자는 본입수입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주자로부터 수납한 주택년부상관금을 횡령하여 동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관장한다

서기 1967년 2월 21일

감 사 원

변상명령서

一한 九萬參仟四圓 93,004원정

귀하에 대한 별지 서기 1967년 2월 21일자 감관계 호 감사원 관장령 의하여 서기 1967년 5월 30일까지 위금을 서울특별시세 변상환을 정한 위 기간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징수법 중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서기 196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한중호 귀하

서기 1967 감관계 47호

관 정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본입수입원의 보조자

외무원(고용원) 한 중 호(원퇴직)

위외자에 대한 서기 1967년도 서울특별시 조관 주택비특별회계 세입금 정령 사건을 검사하고 아래와 같이 관장한다

주 문

(54) 공 고

위의 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93,004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위의 자는 서기 1964년 10월 1일부터 서기 1966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주택년부상환금 징수 의무원으로서 본임수입원의 사무를 보조하던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을 기화로 서기 1966년 3월 3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그 취급에 속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공영주택 년부상환금 62,499원 등 간이주택 년부상환금 30,505원 계 93,004원을 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세입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횡령비소하여 동단체에 손해를 끼쳤다

이는 서기 1966년 12월 8일자 서기갑 200-2502호와 동년 12월 29일자 서도주 822.2-4502호 및 서기 1967년 1월 13일자 서도주 822.2-113호로 당원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장의 범죄발생 통보 및 관제증서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살피건대 위의 자는 본임수입원의 보조자로 있으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주자로 부터 징수한 주택년부상환금을 횡령하여 동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피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서기 1967년 2월 21일

감 사 원

◎서울특별시공고제60호

1. 입찰 등록: 서기 1967년 5월 5일 18:00시까지 입찰등록서에 국세시세납세표 증을 첨부하여 도시계획국 서무과에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가. 목도, 면목지구 서기 1967년 5월 8일 10:00  
나. 성산, 불광, 수류지구 서기 1967년 5월 9일 10:00
3. 입찰 장소: 도시계획국 서무과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할 이상의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를  
입찰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배대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나.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대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액에  
서 3할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토지대금으로 하여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지상물의 철거, 보상, 명도에 관하여는 예도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시 도시계획국 사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서기 1967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서울특별시공고제61호

건설부고시 제2494호(1966년 6월 22일)로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  
업인 청량리 제1육교 가설공사 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청량리 제1육교 가설공사
2.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별지 조서와 같음)

서기 196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도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동명	지번	지목	지적 적	소유 주	자 관 인	비 고
1	회기동	92-12	대	33.0	회기동92-12	鄭景鉉	
2	◇	92-13	◇	11.0	◇ 92 13	孫泳弼	
3	◇	92-32	◇	51.0	◇	◇	
4	◇	92-33	◇	7.0	◇ 92-11	李鮮賢	
5	◇	92-15	◇	13.0	◇ 92-15	鄭愛己	

(56) 공 고

6	회기동	99-40	대	9.0	회기동 66	제단백안계 7일안직립교 예수재립교	한림회 연수단	
7	◇	99-17	◇	21.0	◇ 99-17	崔正夏		
8	◇	99-35	◇	1.0	◇ 99-18	金柄周		
9	◇	99-33	◇	22.0	한강로1가245-3	柳卿子		
10	◇	99-36	◇	0.5	회기동99-20	趙榮一		
11	◇	99-21	◇	35.0	목동298-1	金東洙	회기동 99-8	金成玉 (등기말) 소청
12	◇	99-32	◇	0.9	회기동99-7	沈正澤		
	계			204.4				

진 물 조 서

연 번	소 재 지		구 조	영 수	소 유 자		관 제 인		소유자 이외 의 종류 및 비
	동명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회기동	92-15	목조와즙	3.00	회기동 92-15	趙燮已			
2	◇	92-13	세멘부로 크조와즙	10.56	◇ 92-13	孫泳弼			
3	◇	◇	◇	8.69	◇	◇			
4	◇	92-12	목조와즙	5.76	◇ 92-12	鄭景姬			
5	◇	◇	목조세멘 와즙	11.66	◇	◇			
6	◇	99-17	목조와즙	9.47	◇ 99-17	金英子	99	王久子	가압류
7	◇	99-21	◇	14.20	목동298-1	金東洙	99-8	金成玉	에고등기
8	◇	99-13	◇	14.41	한강로1가 245-3	柳卿子			
	계			137.75					

㉠서울특별시공고제62호

서울특별시 각종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1. 시험실시구분

시험면허종별	원서접수기간	학과시험일시	간 소 비 고
보통 제 1종	5.13~5.14	5.20 14:00	면허시험장및차 몰시공무원교육 문 1 차



보 통 제 2종	5.19~5.25	5.27 14:00	면허시험장및서울 시공무원교육원	1 차
보 통 제 2종	6.10~6.15	6.17 14:00	◇	2 차
보 통 제 1종	6.17~6.22	6.24 14:00	◇	2 차
소형 및 특수	6.23~6.29	7. 1 14:00	◇	특수면허합 단차량합판 2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일자는, 학과시험장에서 알림

나. 학과시험 합격자의 기능시험일자는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지경  
받으십시오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1) 교통관계법령
- 2) 구조 및 취급방법

나. 기능시험

- 1) 저각반응검사
- 2) 코스 및 장거리

3.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57호(면허시험절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나. 보통 제2종 및 특수(2륜) 면허응시자는 서기 1949년도 출생자로서  
학과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 보통제1종 응시자는 서기 1942년도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출생일이  
학과시험 실시일 이전이어야 하고 보통제2종 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매 (이면 신체검사란에 당등 소재 국립 경찰병원기 신체검  
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의 초본 1매

다.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라. 사진 2매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마. 보통제1종 면허 응시자는 3년 이상의 운전경력 증명서 1부(시·도지  
사 발행)

바. 수수료 300원(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용산구 한남동 소재 운전면허 시험장

6. 기 타

가. 필기시험 도구는 정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십시오

나. 이후 각종 면허시험은 계속 실시 하니 상세한 사항은 경찰국 교통과 또는 각 경찰서 교통계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4월 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우

◎서울특별시공고제63호

중앙시범 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건립 및 운영적격자모집 공고  
당시 서대문구 휘동 11.174번지 일대 약 2,000평에 중앙시범종합시장 및 중  
앙아파—트를 건립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자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모자격

가. 공익을 위하여 당사가 지정하는 시장 및 아파—트를 건립하고 동시  
설을 경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을 설립할 수있  
고 인정되는 자

나. 건축공사비의 일부 및 건축 설계비로서 금 54,550,000원정을 당시  
에 예치시킨자

2. 응모절차

가. 전항 나호의 예치금을 당시 산업국 상무과 본인세입세출의 현금 출  
납원 계좌에 입금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나. 당사가 지정하는 응모원서를 제출한 자

다. 전기 1항의 응모자격 및 2항 가호 및 나호의 서류는 필히 당시산업  
국 상무과에 문의하여 본건의 양식과 예치금의 조건등을 지실한후 접  
수시키기 바랍니다

3. 건립적격자 결정방법

당시의 「중앙시범 종합시장 및 중앙아파—트 건립적격자 선정위원회」에  
서 결정합니다

4. 용모원서 접수처

산업국 상무과

5. 용모마감일

서기 1967년 5월 6일까지

6. 기 타

시감 및 아파—트의 건립규모에 관하여는 당시 건설국 영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1967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숙

◎서울특별시공고제6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경신도지구리경리지구 제3동구내 원지 예정지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구획 경리사업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지 예정지를 변경 지강하고 관계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대문구청 및 마포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단원인의 종람에 용합니다

서기 1967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숙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148호

서기 1967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숙

제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권등의 내부위임

1.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 청구에 대한 신고 제정 규정의 결정권·통조 제4항의 보충요구권 등 제6항의 청구권지원은 원칙에 있어는 사무의 신속진 처리와 민원의 해결 및 자기사무에 대한

심의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서기 1967년 4월 10일부터 귀직에게 위촉결정권 요청요구권 및 연기통지권을 내부위임하니 위임 목적에 위배되거나 처리에 착오없이 할것

2. 출장소본은 내부위임에 의한 결정 또는 연기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건마다 자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행할 것이나 그 결정에 앞서 본직이 예비심사를 행할 것이니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의 처리는 중건의 예에 의할것
4. 본직의 직인을 사전에 압날한 결정서 등 용지를 금번에 한하여 세경과에서 별지와 같이 비부하니 구청장의 영수증을 지참하여 서기 1967년 4월 12일한 수령토록 조치할 것이며 이후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인의 사전압날 신청을 할것
5. 금번에 배부하는 결정서등과 이후 신청에 의하여 직인을 압날할 결정서 등은 각구 부과과와 징수과의 주무계장(출장소는 부과계장 또는 징수계장)이 관리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불부물 비치하여 수불상황과 책임의 소재를 항상 명확히 할것  
(첨부물 의제제는 4 탁함)